

[별표 1]<개정 1995.8.31>

열사용기자재(제2조관련)

| 구 분 | 품 목 명 | 적 용 범 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기 관 |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| 금속(주철을 포함한다)으로 만든 것. 다만, 온수보일러·구멍탄용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를 제외한다. |
| | 온수보일러 | 전열면적이 14㎡이하이며 최고사용 압력이 3.5kg/cm ²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. 다만,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/h(도시가스는 20만kcal/h)이하의 가스용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 |
| | 구멍탄용온수보일러 |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구멍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금속제에 한한다 |
| | 축열식전기보일러 |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,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3.5kg/cm ² 이하인 것 |
| | 태양열집열기 | |
| 압력용기 | 1종압력용기 | 최고사용압력(kg/cm ²)과 내용적(m ³)을 곱한 수치가 0.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1.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.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.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.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|
| | 2종압력용기 | 최고사용압력이 2kg/cm ² 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1. 내용적이 0.04m ³ 이상인 것 2.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(단, 증기헤더는 300mm초과)이고 그 길이가 1천mm이상인 것 |
| 요 로 | 요업요로 | 연속식유리용융가마,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, 유리용융도가니가마, 터널가마, 도염식각가마, 셔틀가마 |

| | | |
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, 회전가마, 석회용선가마 |
| | 금속요로 | 용선로, 비철금속용융로, 금속소둔로, 철금속가열로, 금속균열로 |

비고 : 1.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m²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3.5kg/cm²(주철제보일러는 1kg/cm²)이하인 것을 각각 "소용량강제보일러" 및 "소용량주철제보일러"라 한다. 2.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mm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²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0kg/cm²이하인 관류보일러(다만, 그 중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mm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.07m³이하인 것에 한한다)를 "소형관류보일러"라 한다.